제1589호
2019. 3. 7.(목)

발 행 인 : 동 작 구 청 장 이 창 우
편 집 인 : 홍보전산과장 김 미 자
전 화 : 820-1458
F A X : 820-9996

선 람	기관의 장

동 작 구 보

차 례

◎ 조 례
제1422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1423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1424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5
제1425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훈 령
제192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훈령---------- 11
◎ 고 시
제2019-20호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13
◎ 공 고
제2019-271호 : 신고미사용승인(장기미준공)건축물 시정지시 및 촉구안내 공시송달 공고-------- 18
제2019-290호 : 건축선 변경 지정 공람 공고---------- 20
제2019-304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4
◎ 인사발령 ---------- 32

공 람														

1.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구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동 작 구

조 례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2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다만,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를 “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구 지역을 대표하므로 직무 수행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 유연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조항 삭제 (안 제17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2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3월 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4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소모품 지원
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5.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점검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구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조례

□ **제정이유**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이용활성화 등
(안 제3조 ~ 제4조)

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안 제5조)

라.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영업자의 협조, 연합회의 구성
(안 제6조 ~ 제8조)

마. 포상(안 제9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2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3월 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 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정무역단체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구의회사무국

3.「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우선 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구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등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관 평가)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경기부양,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안 제1조 ~ 제4조)

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안 제5조)

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수립(안 제6조)

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 작성 및 우선구매 (안 제7조 ~ 제11조)

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및 판로지원(안 제12조 ~ 제13조)

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반영 기관평가 실시(안 제14조)

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촉진 포상(안 제15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142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을 “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우리구로 전입해 온 대상자들에게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 하여, 그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복지증진에 일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요건 완화 (안 제9조)

-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 삭제

훈 령

◈ 서울특별시동작구 훈령 제192호

서울특별시동작구통장수당지급규정 일부개정훈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수당지급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

2019년 3월 7일

서울특별시동작구통장수당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수당지급규정”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수당 지급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수당등은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통장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당 등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통장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매월 15일을 원칙으로 하되 민방위 날에 지급한다.”를 “매월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동 형편에 따라 동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중 “일괄”을 “일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근무일 산정 시 위촉일 및 해촉일을 포함하되, 임기만료자의 해촉일은 임기만료일로 하고, 수당 산정 시 원단위는 반올림 처리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급방법) 수당은 동장이 지급하며, 통장 본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수당지급규정 일부개정훈령

□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통장수당 지급일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며, 일할계산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1) '조례 제8조제1항' → '조례 제11조제1항'(안 제1조)

(2)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 → '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6항'(안 제2조)

나. 통장수당 지급일 변경(안 제3조)

(1) 매월 15일 지급 → 매월 말일 지급

다. 통장수당 일할계산 세부기준 마련 및 문구 변경(안 제4조)

(1) 근무일 산정 시 위촉일 및 해촉일을 포함하되, 임기만료자의 해촉일은 임기만료일로 함

(2) 수당 산정 시 원단위 처리 : 반올림

(3)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일괄' 지급한다. →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일할' 지급한다.

라. 통장수당 계좌지급에 따른 변경(안 제5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변경(안 제5조)

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9 - 20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동 작 구 청 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1조(명칭) 본 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2.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을 추천한다.
2. 협의회의 규모, 권역별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또는 별도로 부회장단이 합의 추대한 권한대행이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 운영실무를 총괄하고, 사무부총장은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6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총회는 연 1회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
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3.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위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단 회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의 모든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총회, 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2.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회계
3.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4.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5.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
6.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15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6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2. 특별부담금
3. 기타 수입

제17조(부담금) ①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②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협의·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장단 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20조(감사 실시) ① 감사는 매 회계년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구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별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 기초지자체 명단

(2019.1.31. 기준)

구 분		회원 기초자치단체명
계		총 93개
수도권	서울(19)	종로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동작구**,관악구, 중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인천(4)	동구,미추홀구,남동구,옹진군
	경기(24)	수원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양주시,과천시,의왕시,구리시, 남양주시,**오산시**,**화성시**,시흥시,군포시,하남시,파주시,여주시,이천시,용인시,안성시,김포시,광주시,성남시,포천시,의정부시
중부권	대전(5)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충북(3)	**증평군**,음성군,괴산군
	충남(8)	공주시,아산시,**논산시**,**당진시**,금산군,부여군,서산시, 계룡시
강원(4)		**춘천시**,**홍천군**,양구군,인제군
영남권	부산(4)	**북구**,연제구,사상구,남구
	울산(5)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경북(1)	**구미시**
	경남(2)	**창원시**,**거제시**
호남권	광주(4)	**동구**,**남구**,북구,서구
	전북(6)	**전주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군산시,진안군
	전남(4)	**담양군**,영광군,순천시,구례군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271호

신고미사용승인(장기미준공)건축물 시정지시 및 촉구안내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소유자에게『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과-3402(2019.2.19.)호로 신고미사용승인(장기미준공)건축물 시정지시 및 촉구 안내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3월 7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번	대지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1	상도동 3*6-9	이*인	4층 43.28㎡ 증축

2. 공고기간 : 2019. 3. 7. ~ 2019. 3. 21. (15일간)

3.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9. 3. 21.까지(동작구청 건축과)

4. 처분제목 : 신고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시정지시 및 촉구 안내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촉구하오니 공고기한 내 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 구(참조: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

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290호

건축선 변경 지정 공람 공고

동작구 고시 제2000-1호(2000.1.11.)로 지정된 동작구 미관지구 내 건축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8.4.19.)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을 변경·지정하여 가로변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건축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고 「건축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건축법시행령」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7일

동 작 구 청 장

1. 건축선 지정 대상지역 및 내용

연번	도로명	구간		비고
		시점	종점	
1	노들로	대방동 498-1	노량진동 319	해당 도로(시·종점 구간에 한정한다)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에 따른 **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본동 478	본동 479-1	
		대방동 88-22	노량진동 13-17	
		본동 258-2	본동 482	
		본동 10-23	본동 산3-8	
2	현충로	본동 2-1	동작동 327	
		본동 3-9	동작동 126-3	
3	노량진로	대방동 94-1	노량진동 151-1	
		본동 360-9	본동 221-4	
		대방동 341-3	본동 150-1	
4	상도로	대방동 399-3	상도동 407	
		대방동 400-1	상도동 산57-32	
5	사당로 (사당로2길포함)	상도동 511	사당동 147-106	
		상도동 501-11	사당동 147-53	

6	남부순환로	사당동 산55-2	사당동 1043-12	
7	여의대방로	대방동 341-8	신대방동 565-21	
8	시흥대로	신대방동 565-25	신대방동 698-26	
9	양녕로1	본동 258-1	본동 산7-2	
		본동 47-53	본동 135-18	
10	양녕로2	상도1동 516	상도1동 701-1	
		상도1동 537	상도1동 754	
11	장승배기로	노량진동 44-11	상도동 364-36	
		노량진동 63-11	상도동 373-71	
12	보라매로	대방동 405-11	신대방동 343-5	
		대방동 406-5	신대방동 720-1	
13	동작대로	동작동 산29-2	사당동 1043-14	

2. 공고기간 : 2019.3.7.(목) ~ 2019.4.5.(금) / 3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 위 공고(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예고 기간 내에 아래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9.4.5.(금)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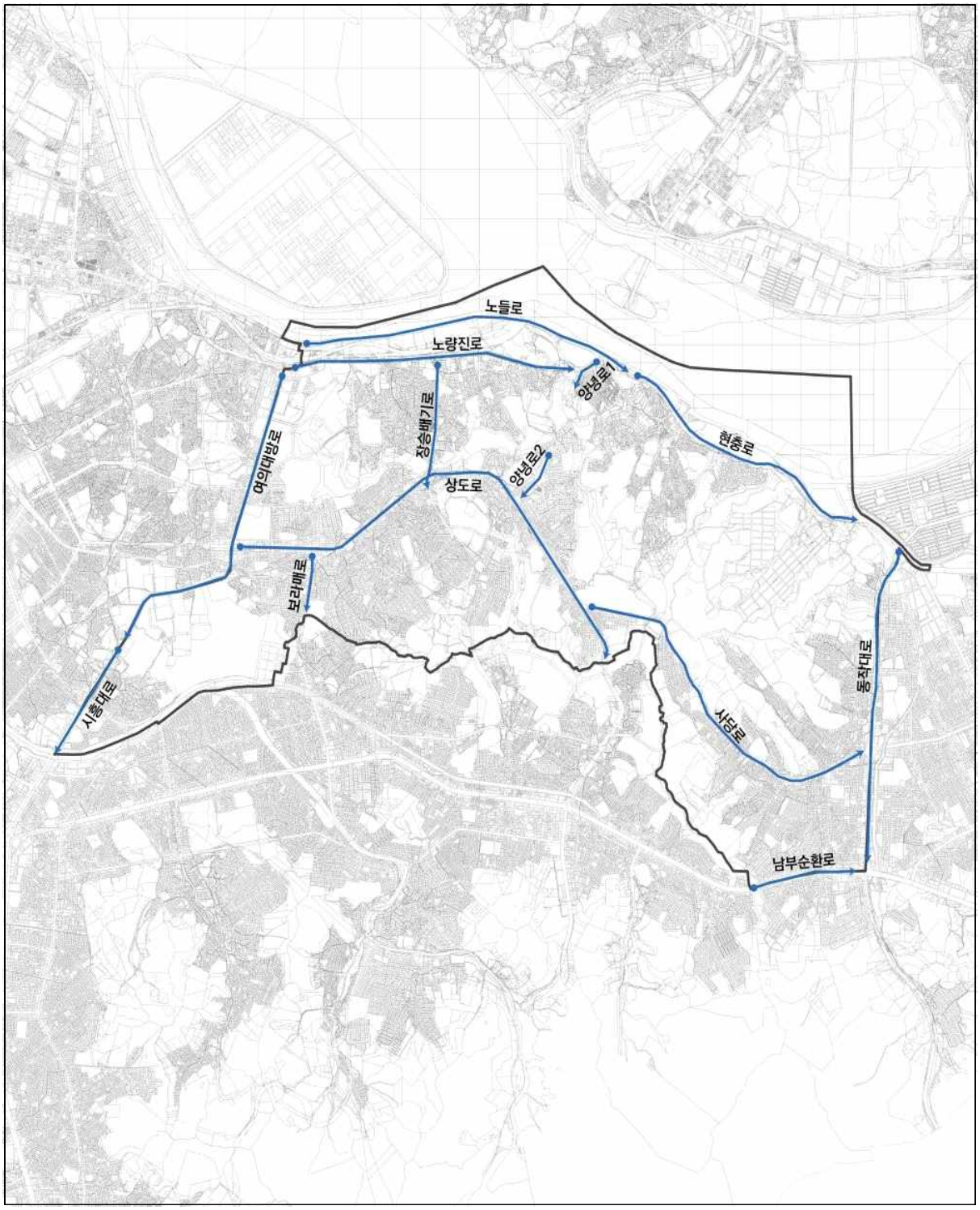
나.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건축과

- 주 소 : (우)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 2층(건축과)
- 전 화 : 02)820-1390~2
- 팩 스 : 02)820-9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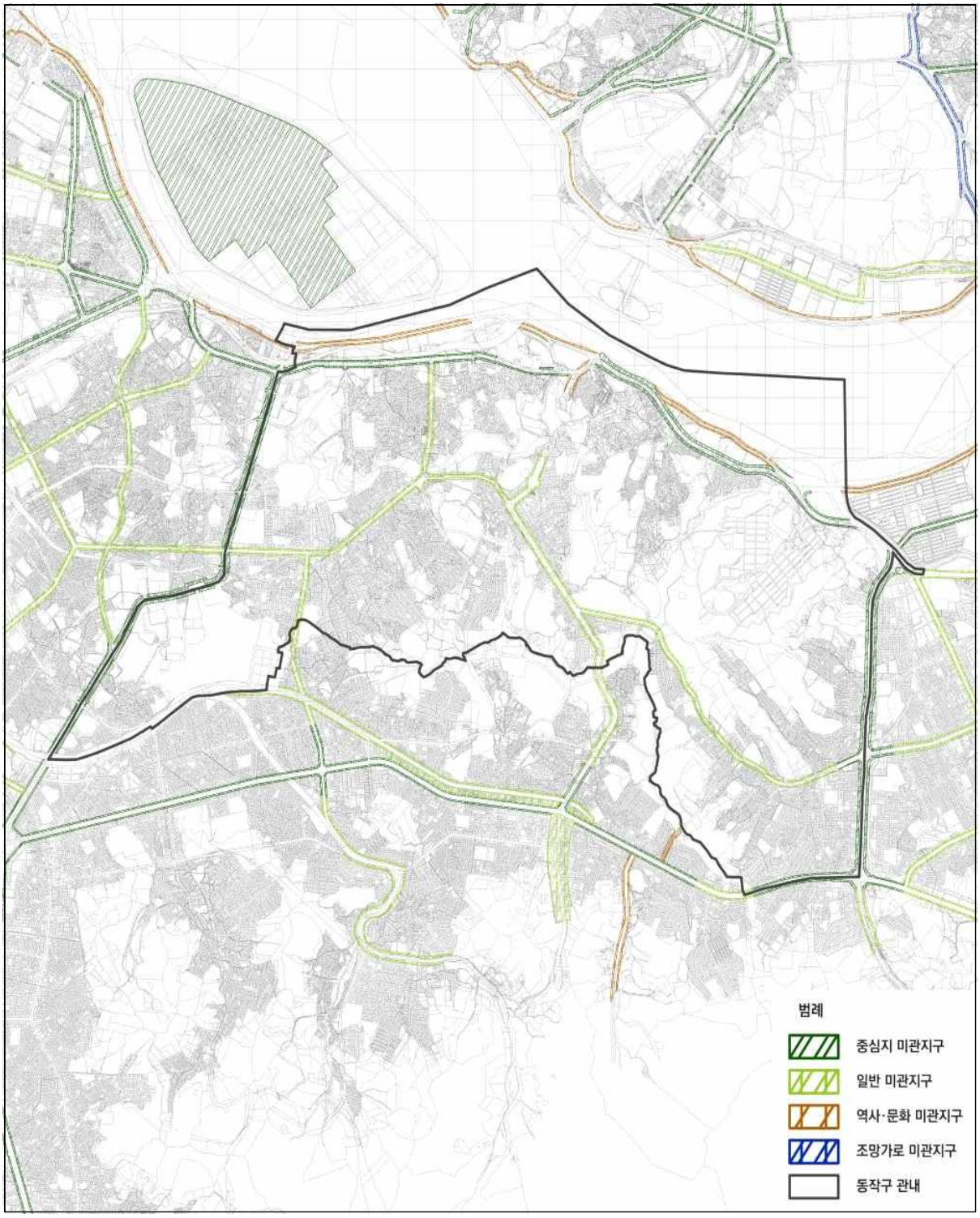
※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인 경우 행정예고 기간 만료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정함.

4. 기타사항 : 제출기일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1] 건축선 지정 대상 노선명(도로) - 기존 미관지구 도로변



[첨부2] 기존 미관지구 현황도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30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7일

동 작 구 청 장

1. 개정이유

서울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기준 개정권고안에 따라 우리구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기준을 강화하고, 또한 신축상가에 대한 공고시기를 개정하여 소비자의 편의제공과 판매업소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축상가에 관한 공고 시기 변경(안 제3조제2항)

1) 현행 소유권보존등기 기준에서 사용승인이후 특정시점으로 변경

-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 등) 60일이상 경과한 경우
-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 등) 신축상가 내 점포의 1/2이상이 상가 임대계약 또는 입점준비를 완료한 경우

나.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이상에서 100m이상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

다. 개정된 규칙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부칙 안 제2조)

1) 기존 소매인의 폐업으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 시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 적용
2) 기존 소매인이 위치변경 신청 시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 적용(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 100미터 거리제한을 받음)
3)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중인 경우도 포함한다.)

4)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조항 번호 오류 변경(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마. 알기 쉬운 규칙 마련을 위한 조문정비(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 (참조 : 생활경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9층 생활경제과 (대방동, 유한양행빌딩)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전화 : 02 - 820 - 1184, FAX : 02 - 820 - 4083, E-mail : 2015012477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다.

1.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 등)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2.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 등) 신축상가 내 점포의 1/2이상이 상가 임대계약 또는 입점 준비를 완료한 경우

제4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으로 하고 “50미터”를 “100m”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를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의 본문·제3항”을 “「도로교통법」제8조·제1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

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 100미터 거리제한을 받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
2.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

신·구조문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제16조제4항,「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생 략)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로 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 등)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2.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 등) 신축상가 내 점포의 1/2이상이 상가 임대계약 또는 입점준비를 완료한 경우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100m----------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의 본문·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점포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 「도로교통법」 제8조·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td><td rowspan="2">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td><td colspan="8">2. 구 분</td></tr>
<tr><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
심사</td><td></td><td>존속
기한
연장</td><td></td></tr>
<tr><td>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9">○ 소관부서: 생활경제과
○ 작 성 자: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담당 정진환</td></tr>
<tr><td>4. 근거법령명 등</td><td colspan="5">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td><td>관 련
규제수</td><td colspan="3">1</td></tr>
<tr><td>5. 규제의 구분</td><td colspan="9">○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td></tr>
<tr><td>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td><td colspan="9">○ 담배소매인간 거리 확대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table>
<tr><th>조문</th><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td><td>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u>50미터 이상</u>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td><td>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u>100미터 이상</u>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td></tr>
</table></td></tr>
<tr><td>7. 규제의
존속기한</td><td colspan="9">○ 5년</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규제의 배경

○ 대기업 편의점의 과당출점으로 인한 경쟁과 최저인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

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영업환경 개선과 경영상 안정을 위해 신규진입 제한방안이 필요

나. 규제의 적용기준

○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한 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존의 소매인이 그 영업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한 때

다. 규제의 목표설정

○ 무분별한 신규 담배소매점 개설에 따른 기존 소매업자의 영세화 방지 및 유통질서 확립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 요소

○ 기존 담배소매인은 무분별한 신규 담배소매점 개설이 제한되어 상권보호 측면에서 개정안에 찬성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점포 양도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 등에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

○ 대기업 편의점은 점포 개발 등 신규출점이 어려워져 담배소매인간 거리제한 강화에 대한 반대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현재 기술수준이나 행정환경에 비추어 실현가능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규제 강화 필요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담배소매인 지정 권한 부서에서 규제하는 것이 옳고 다른 방법으로는 담배소매인 제한 및 관리가 어려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유사한 규제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예산 수반사항이 아니므로 비용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대기업 편의점 과당출점경쟁을 완화하여 편의점 및 슈퍼 등 골목상권의 영업권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비용보다 공익상 편익이 큼

○ 담배소매인간 거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

5. 경쟁 제한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 여부

○ 국민건강 증진 및 담배소매 유통질서 확립의 공익목적을 위한 규제이지만 담배소매인간 거리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담배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를 일부 제한

나. 기업활동 저해 여부

○ 대기업 편의점의 신규출점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편의점 개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향후 편의점 출점 시 신중한 상권분석 등을 통해 대기업 본사와 편의점 주간 상생도모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제3항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2(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담배소매인간 거리제한 기준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인사발령

[발령 제57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소 속	직 급
김 정 근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행 정 국	지 방 서 기 관

2019.2.28.字

[발령 제59호]

가. 신규임용

연번	성 명	발 령 사 항	비 고	
			부 서	직 급
1	**정 부 윤**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의사)에 임함 보건소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9.3.4.~2021.3.3.)	신 규	임 용
2	**박 예 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스마트도시조성)에 임함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9.3.4.~2020.3.3.)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신 규	임 용
3	**김 영 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마을계획)에 임함 상도제2동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9.3.4.~2020.8.12.)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신 규	임 용
4	**박 수 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CCTV영상정보관리)에 임함 안전재난담당관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9.3.4.~2020.3.31.)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신 규	임 용
5	**양 옥 경**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사회복지)에 임함 복지환경국 어르신청소년과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9.3.4.~2020.3.3.)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신 규	임 용
6	**정 은 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사회복지)에 임함 복지환경국 어르신청소년과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9.3.4.~2020.3.3.)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신 규	임 용

연번	성 명	발 령 사 항	비 고	
			부 서	직 급
7	**김 봉 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불법주정차단속)에 임함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9.3.4.~2020.3.3.)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신 규	임 용
8	**김 인 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불법주정차단속)에 임함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9.3.4.~2020.3.3.)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신 규	임 용
9	**박 정 호**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불법주정차단속)에 임함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9.3.4.~2020.3.3.)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신 규	임 용
10	**박 창 훈**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불법주정차단속)에 임함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9.3.4.~2020.3.3.)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신 규	임 용
11	**신 상 석**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불법주정차단속)에 임함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9.3.4.~2020.3.3.)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신 규	임 용
12	**김 미 성**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영양사)에 임함 보건소 보건기획과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9.3.4.~2020.3.3.)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신 규	임 용
13	**강 명 숙**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간호사)에 임함 보건소 보건의약과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9.3.4.~2020.3.3.)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신 규	임 용
14	**최 수 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운동처방사)에 임함 보건소 보건의약과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9.3.4.~2020.3.3.)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신 규	임 용

2019. 3. 4.字

[발령 제60호]

나. 근무기간 연장

연번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박 현**	근무기간을 연장함 (2019.3.5.~2020.3.4.)	보건기획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민원상담)

2019. 3. 5.字

[발령 제61호]

다. 근무기간 연장

연번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김 용 민**	근 무 기 간 을 연 장 함 (2019.3.7.~2020.3.6.)	행 정 지 원 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숙 직 전 담)
2	**김 재 영**	근 무 기 간 을 연 장 함 (2019.3.7.~2020.3.6.)	행 정 지 원 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숙 직 전 담)
3	**이 상 빈**	근 무 기 간 을 연 장 함 (2019.3.7.~2020.3.6.)	행 정 지 원 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숙 직 전 담)
4	**조 래 준**	근 무 기 간 을 연 장 함 (2019.3.7.~2020.3.6.)	행 정 지 원 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숙 직 전 담)

라. 당연퇴직

연번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김 현 민**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에 의거 당연퇴직 (임용기간 : 2018.3.7.~2019.3.6.)	자치행정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마 을 공 동 체)

2019. 3. 7.字

[발령 제62호]

마. 의원면직

연번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전 지 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건 강 관 리 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찾 동 정 신 건 강 증 진)

2019. 3. 9.字.

[발령 제63호]

연번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정 수 정**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9.3.5.~2019.9.4.)	일자리정책과	지방행정서기보시보
2	**임 민 혁**	지방시설서기보(토목)에 임함	교 통 행 정 과	지방시설서기보시보(토목)

2019. 3. 5. 字.

동작구보

제1589호

동작구



www.dongjak.go.kr

동 작 구